

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278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5. 10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 : 2024. 05. 13.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05. 31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)

가. 개정이유

- 헬스장(체력단련장)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헬스장을 이용료 부과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헬스장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에서 “헬스장” 용어 삭제(안 제4조·제19조·제23조)
- 2) 헬스장 요금표 삭제(별표 3)
- 3) 서식 개정(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[복지지원과-11069(2024. 3. 14.)]: 특이사항 없음

4) 기타사항

-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454호

. 예고기간: 2024. 3. 11. ~ 4. 1.(21일간)

.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-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헬스장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헬스장을 이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○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“헬스장” 용어 삭제(안 제4조, 제19조, 제23조)

○ 헬스장이 수영장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“헬스장” 용어 삭제

- “헬스장 요금표” 삭제 및 서식 개정(별표 3, 별지 제14호 서식~제15호 서식)

○ 헬스장 이용방법 및 요금과 관련한 별표 3을 삭제하고, 회원가입 신청서와 이용기간 연장서 서식을 개정하였음.

○ 「체육시설법」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“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 지도자를 배치” 하여야 함에 따라 헬스장을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수영장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, 헬스장 무료이용에 따른 관내 헬스장 영업자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는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